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286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12.

발 의 자:이형석·김민기·안규백

한병도 · 임호선 · 김민철

김회재 · 이탄희 · 최기상

홍익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 공단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으나,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과정에서 본 법 령의 개정을 수반하지 못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취득하는 일부 부동산 에 대해 취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(안 제47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7조제2호 중 "제15호 및 제16호"를 "제21호 및 제22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47조(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 면)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 면)
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
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
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
는 부동산(임대용 부동산은 제
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
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
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,
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
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
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
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
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한국환경공단법」 제17조 2
제1항제11호· <u>제15호 및 제16</u> <u>제21호 및 제22</u>
<u>호</u> 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: 취 <u>호</u>
득세의 100분의 25